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과 자원공동개발

이 석 우 * · 박 영 길 **

〈목 차〉

- I. 최근 동향
 - 1. 중일 간의 주요 갈등 동향
 - 2. 미국의 입장
- II.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과 자원공동개발
 - 1. 해양경계획정 문제
 - 2. 자원공동개발 문제
- III. 결 론

I. 최근동향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 또는 대만과 일본 간의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촉발된 것은 남중국해에 대량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었을 수 있다는 유엔 후원하에 발간된 1968년 보고서였다.¹⁾ 1972년 류큐에 대한 시정권이 미국에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1) UN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ECAFE)에서 작성. Hungdah Chiu, "An Analysis of the Sino-Japanese Dispute Over the T'iaoyutai Islets(Senkaku Gunto)", *15 Chinese (Taiw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and Affairs*, p.10.

서 일본으로 이양되면서 센카쿠열도에 대한 관할권도 일본으로 넘어갔다. 이후 중국(대만)과 일본 간에는 양국 국교수립 시기를 제외하고는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곳에서는 특히 2000년대에 발생한 사건들을 일견하고 최근의 동향 내지 갈등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중일 간의 주요 갈등 동향

2004년 3월 24일 중국의 우익 단체가 센카쿠열도의 섬들에 상륙하기로 계획하였고, 이들 중 실제 상륙한 7명이 불법 상륙이라는 이유로 일본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이민통제 및 난민인정법을 근거로 한 것이었는데, 센카쿠열도 진입을 이유로 일본 정부가 사람을 체포한 첫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일본 외교부는 불법상륙에 대해 중국 정부에 항의하였지만 오히려 중국 정부는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결국 이들은 일본으로 송환된 후 석방되었지만, 일본은 이후 어느 누구도 사전 허가 없는 섬에 상륙할 수 없다고 공표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날, 미국 국무부는 센카쿠열도의 주권 문제에 대해 미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중립적 견해를 발표하였다.²⁾

중국은 2003년 8월 일본이 주장하는 경계선 서쪽 3해리에 위치하는 춘샤오(春曉) 가스전 개발을 발표하였다. 이에 일본은 2005년 7월부터 동 가스전 주변 수역의 지층구조에 대한 3차원 입체조사를 실시하여³⁾ 동 가스전이 중간선의 일본 측 자원과 연결되어 있다며 개발 중지를 요구하였으며, 중국의 반응이 없자 일본 측 해역에 대한 시굴권을 민간기업에 인가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양국은 2008년 5월 후진타오 주석의 일본 방문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재확인하고 해저자원의 공동개발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하고 동년 6월 동중국해 일부 지역에 대한 공동개발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양국 간 "동중국해 협력", "동중국해 공동개발에 대한 양해", "중국법에 따른 춘샤오 석유가스전의 개발에 일본 법인(法人) 참여에 대한 양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합의 후 중국이 춘샤오 가스전 개발에 대한 일본 기업 참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이 이에 항의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2) Global Security.org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war/senkaku.htm>). (2012년3월1일 방문).

3) Ibid.

2005년 2월 일본은 1996년 민간인이 건설하여 운영해 왔던 조어도 등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해양경비대가 운영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통제를 보다 강화하였다. 같은 해 6월에는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대만 어선과 일본 해경 순시선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대만이 해군 함정을 파견함으로써 대만과 일본 간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 함정에는 대만의 국회의장과 국방장관까지 동승하고 있었는데, 양국이 자제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2008년 6월에는 대만과 일본 간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화되었던 시기였다. 동월 10일 센카쿠열도 영해 내에서 270톤 규모의 대만 어선이 일본 순시선과 충돌하여 좌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대만과 일본은 모두 상대방이 고의로 충돌을 일으켰다고 비난하였다.⁴⁾ 일본은 처음엔 선장을 구금하면서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외교문제 비화를 막기위해 3일만에 그냥 석방하였다.⁵⁾ 그러나 6월 16일 대만의 민간 활동가들이 5척의 대만 해양경비정의 호위를 받으면서 센카쿠열도의 주섬인 조어도에 약 0.4해리까지 근접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때 일본 해양경비정이 뒤따랐지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6월 20일 일본 경비정이 대만 어선을 고의로 충돌했다는 동영상이 공개되자 일본은 사건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1천만 대만달러(미화 약 31만 달러)를 선박소유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렇지만 대만은 항의의 표시로 일본 주재 대만대표를 소환하고 도서 방어를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⁶⁾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갈등은 2010년 9월 7일 가장 첨예하게 드러났다. 이날 섬의 12해리 영해 경계부근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경비선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충돌 후 일본 경비대가 중국 선원을 체포하고 어선을 나포하였다. 일본은 이전과는 달리 구금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선장을 기소해서 처벌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선장의 즉각적 석방을 요구하면서 일본에 대한 강도높은 전방위 압박을 가하였다. 즉, 중국은 주중 일본 대사의 4차례 소환, 예정된 고위급 회담 거부, 일본 민간인의 간첩혐의 체포, 일본과의 수출입통관절차 엄격 시행, 중국이 독과점 생산하는 희토류의 일본 수출 중단을 결정하였다. 특히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에 대한 통제는 일본 산업에 치명적 영향을 미쳤다. 결국 일본

4) Taiwan protests as Japan holds fishing boat captain”: <http://uk.reuters.com/article/2008/06/12/taiwan-japan-idUKPEK35756320080612> (2012년3월1일 방문).

5) http://news.bbc.co.uk/chinese/trad/hi/newsid_7450000/newsid_7452300/7452336.stm, (2012년3월1일 방문).

6) http://afp.google.com/article/ALeqM5iIop13n4GrM8b9z_DwLEubvoEbvq (2012년3월1일 방문).

은 9월 24일 “일본 국민에 대한 영향과 일중관계를 고려하여” 중국 선장을 석방하였다. 선장 석방 후 중국은 일본에 대해 희토류의 일본 수출중단을 해제했지만 선장 '불법체포'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일본은 순시선의 피해 배상을 중국에 요구함으로써 맞섰다.

위 사건에서 중국의 요구 관철은 중국이 이전과는 달리 막강한 경제력과 급성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 동안 감추었던 '대국굴기'(大國崛起: 큰 나라로 우뚝 선다.)의 의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국굴기'에 대해 세계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특히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각종 희소금속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은 일본,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대응책 마련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중국의 일방적 승리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그 동안 소원했던 일본과 미국이 정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키나와 열도선을 넘어 태평양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의 해양전략에는 오히려 장애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은 일본은 영유권 강화를 위해 조어도에 자위대 주둔과, 자위대 소속의 수륙양용부대('해병대') 창설을 검토하고 있는 등 일본의 해군력 강화 계기도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희토류의 대체금속 개발과 몽골에서의 희소금속 광산개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자원무기화에도 대응하고 있다.

위 사건 이후 2011년 대만의 어선이 센카쿠열도에 진입을 시도하기도 하였지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간 긴장관계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보다 심각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2011년 항공모함을 출항하고 전투기와 군함 등을 첨단화하는 등 전력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이에 맞서 일본도 해상자위대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영토 문제를 '국가 핵심 이익'의 하나로 간주하면서 절대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천명하고 있으며, 양국 간 영토문제에 제3자의 개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센카쿠열도 문제가 협상 또는 국제법원에 의한 평화적 해결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1월 16일 일본 정부는 39개의 무인도서에 이름을 붙이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중에는 센카쿠열도의 4개 도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중국은 센카쿠열도에 대한 주권은 명백히 중국에 있다고 항의하면서 천연가스 공동개발을 위한 예정된 회담을 연기하였다.⁷⁾

2. 미국의 입장

안보 전략적 측면에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센카쿠열도 분쟁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미국일 것이다. 동 열도가 중국의 통제하에 들어갈 경우 미국은 동중국해 전체에 대한 제해권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군사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동중국해 문제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게 다두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의 무력 충돌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최근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여러 차례 공언해 오고 있다. 하지만, 어느 양국 간의 영토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전통적 입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센카쿠열도 분쟁에 대해서도 유지하고 있다.⁸⁾

2004년 3월 24일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센카쿠열도가 1972년 미국으로부터 이양된 이래로 일본 정부의 시정 통제하에 있어 왔으며, 1960년 미일 상호협력안 보조약 제5조는 동 조약이 일본의 시정하에 있는 영토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센카쿠열도도 그에 포함된다고 하였다.⁹⁾ 그러나, 또한 센카쿠열도는 분쟁 지역이며 미국은 센카쿠열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¹⁰⁾ 2010년 9월 중국 선장의 나포로 촉발된 중일 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국무장관 힐러

7) People's Daily Online, "China 'unwavering' on Diaoyu Islands"(원출처: Shanghai Daily, 2012.1.17), <http://english.people.com.cn/90883/7706973.html> (2012.3.1 방문).

8)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 M. Taylor Fravel, "Explaining Stability in the Senkaku(Diaoyu) Islands Dispute", in G. Curtis, R. Kokubun and W. Jisi (eds.), *Getting the Triangle Straight: Managing China-Japan -US Relations*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2010), pp.144-164.

9) 동 조항은 제3국의 일본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의 군사적 개입의 근거가 된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against either Party in the territories under the administration of Japan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processes. Any such armed attack and all measures taken as a result thereof shall be immediately reported to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51 of the Charter. Such measures shall be terminated when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the measures necessary to restore and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밑줄 강조)

10) Global Security.org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war/senkaku.htm>). (2012년3월1일 방문).

리 클린턴도 위와 같은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즉, 힐러리 클린턴은 2010년 10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센카쿠열도가 미일 방위 조약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¹¹⁾

사실 미국이 센카쿠열도의 주권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더라도, 그것이 국제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군사적 개입 보장만으로도 미국과 일본 모두 실질적 성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앞으로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은 강화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II.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과 자원공동개발

1. 해양경계획정 문제

1) 중국과 일본의 해양경계 관련 규정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동 법률은 대륙붕에 대해 “영해 밖의 본국 육지영토의 모든 자연적 연장으로 대륙주변부 외연의 해저 구역의 해저와 하층토까지 확장되며, 만일 영해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대륙주변부 외연까지의 거리가 200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200해리까지 확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²⁾ 이는 용어사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1항의 대륙붕 정의조항을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국가와 주장이 중첩되는 경우, 동 법률은 “국제법의 기초 하에서 공평의 원칙에 따라 협의로써 경계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³⁾

11) New York Times (2010.10.30.), “U.S. Works to Ease China-Japan Conflict”, <http://www.nytimes.com/2010/10/31/world/asia/31diplo.html?sq=senkakuunitedstates&st=nyt&adxnll=1&scp=7&adxnllx=1330599708-DEHs72sAkDBCz/4DG6rhEg> (2012년3월1일 방문).

12) 중국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1998.6.26 제정), 제2조.

반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은 200해리까지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규정하면서, 외국과 주장이 중첩되는 경우는 양국 영해기선으로부터 중간선까지의 해역이라고 하였다.¹⁴⁾

요컨대, 중국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주장하면서 주장 중첩이 있는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고만 하고, 대륙붕주장에 대해서는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론을 강조하는 반면, 일본은 중국과 같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주장하면서도 주장 중첩이 있는 경우 중간선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즉, 주장 중첩수역에 대해 일본은 스스로 중간선까지로 경계를 제한한 반면, 중국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합의한다고만 하였기 때문에 국내법상 200해리까지는 관할권이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에서 일본측 200해리까지는 양국 법률상으로도 관할권 중첩이 발생하고, 중간선의 중국 측 수역에서는 오로지 중국만이 관할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점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와도 유사하다.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법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언하면서 인접국과는 합의에 따라 경계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⁵⁾ 이것만 보면 중국의 관련 조항에서 “공평의 원칙”만 생략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동 법률은 “권리행사”는 중간선까지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⁶⁾ 따라서,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법은 주장 중첩수역의 경계를 당사국과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중간선까지로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를 중간선까지로 한 일본의 법률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해양경계획정

양국 연안 간 거리가 400해리에 미치지 못하는 동중국해에서 중일 간 해양경계획정을 할 때 고려할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¹⁷⁾ 우선은 이 글의 대상이기도

13) 동 법률 제2조 하단.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시에도 동 법률의 이 같은 내용을 선언하였다. UN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convention_declarations.htm#Chinaafter ratification (2012.3.31 방문).

14)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1996.6.14 제정), 제1조(배타적경제수역) 및 제2조(대륙붕). 동 법률 제2조 2항은 200해리를 초과한 대륙붕은 확장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15) 한국 배타적경제수역법(1996.8.8 제정), 제2조.

16) 동 법률 제5조 2항.

17) 중국과 일본 연안 사이에서 가장 긴 거리는 약 345해리에 이른다. Jianjun Gao, “The Okinawa

한 센카쿠열도가 경계획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오키나와해구가 또한 대륙붕 경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양국 경계가 400해리 이내에서도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하는 이론적 문제가 있다.

(1) 경계획정에 있어서 센카쿠열도의 역할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의하면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이 아닌 “섬”은 최대 12해리 영해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센카쿠열도가 “섬”으로 인정된다면, 그 영유권을 가진 국가는 이를 근거로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센카쿠열도는 5개의 작은 섬들과 3개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5개의 섬들, 특히 이 중 주섬인 조어도는 면적이 3.5km²에 이르며, 나무들이 우거지고 식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리적 고립으로 인해 현재 인간이 거주하지는 않고 있지만, 거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주변 수역의 풍부한 어장과 지하자원을 고려할 때 독자적 경제생활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센카쿠열도를 섬으로 주장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센카쿠열도가 일본의 영유권에 속한다면 센카쿠열도와 중국 연안과의 등거리선을 경계로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중국의 영유권이 인정된다면 동 열도와 류큐제도 사이의 등거리선을 경계로 주장할 수 있다. 조사에 의하면 두 등거리선 사이의 면적이 67,800km²에 이르는데,¹⁸⁾ 경계획정에서 센카쿠열도가 완전한 효과를 인정받을 경우 이만큼의 면적을 얻거나 잃게 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현재 중국과 일본 모두 센카쿠열도를 근거로 한 해양 경계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추정컨대, 일본의 이러한 입장은 류큐제도와 중국 연안 사이의 중간선을 주장하더라도 센카쿠열도가 자국 수역에 속하기 때문에 영유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중국을 더 자극하는 것은 피하고, 또

Trough Issue in the Continental Shelf Delimitation Disputes within the East China Sea”, 9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0), p.146, footnote 10. 일각에서는 양국 연안 간 최대거리를 360해리로 보기도 한다. Carlos Ramos-Mrosovsky, “International Law’s Unhelpful Role in the Senkaku Islands”, 29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8), p.911.

18) Victor Prescott and Clive Schofield, *The Maritime Boundaries of the World* (Martinus Nijhoff, 2005), p.438.

한 연안과 동떨어진 외딴 섬에 대해 해양경계획정에서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지 않는 국제판례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오키나와해구를 양국의 경계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해구는 센카쿠열도와 류큐제도의 중간선에서 일본 측에 위치하고 있기 굳이 센카쿠열도를 근거로 주장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중국의 주장은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대륙붕과는 달리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와는 관련 없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2) 오키나와 해구 문제

류큐제도에 인접하면서 동 제도와 평행하게 뻗어 있는 오키나와 해구는 길이가 약 900km, 폭이 36~150km, 면적이 약 10만km²에 이른다.¹⁹⁾ 그리고 오키나와 해구는 깊이가 1000m가 넘는데, 동중국해의 평균 수심이 약 370m인 점을 감안하면 지형상 뚜렷이 구별됨을 알 수 있다.²⁰⁾

중국이 2009년 5월 11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예비정보(preliminary information)에 의하면, 중국은 4개의 FOS(Foot of Slope, 대륙사면의 끝점)을 정하고, FOS로부터 20내지 38해리 지점을 대륙붕의 외측한계로 정하였다. 이들 4개의 선을 연결하면 중국이 주장하는 대륙붕의 경계선이 되는데, 중국의 기점으로부터 가장 짧은 것은 228해리이고 가장 긴 것은 277해리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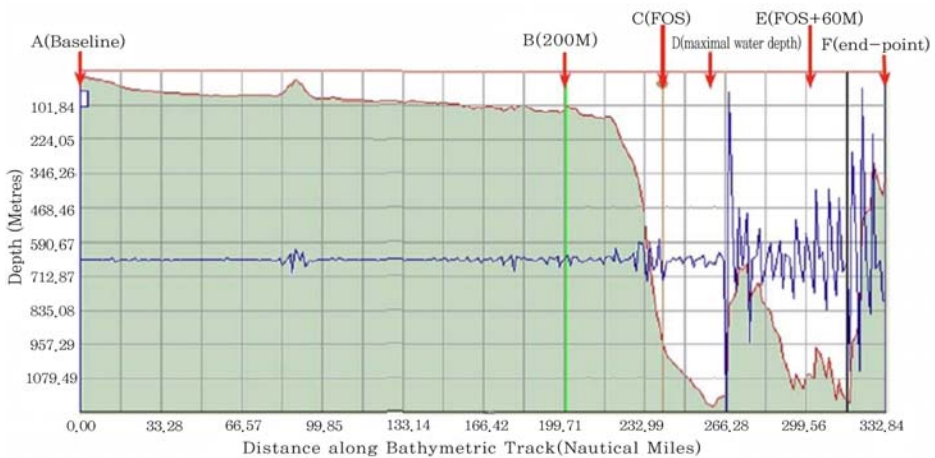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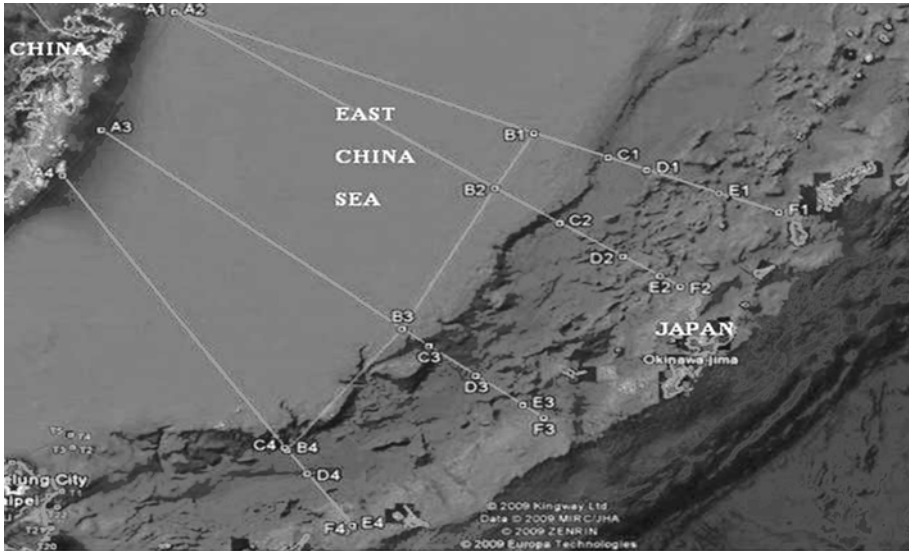
그림 1. 오키나와 해구 단면도²¹⁾

19) Jianjun Gao(2010), op.cit., p.145.

20) Ibid.

21) Preliminary Information Indicative of the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7. <http://www.un.org/>

중국이 주장하는 대륙붕 한계는 우리나라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은 날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예비정보를 제출하였는데, 4개의 FOS를 정한 후 외측 경계를 현재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의 남측 경계와 같이 하고 있다.



Source: blog.sina.com.cn/s/blog_56eccef30100dlrw.html (visited on 1 June 2009, modified).

그림 2. 중국의 대륙붕 외측 한계²²⁾

오키나와해구를 대륙붕 경계로 해야 한다는 중국과 한국의 주장을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일본은 오키나와해구는 두 국가 육지의 자연적 연장 과정에서 단지 움푹 들어간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계는 양국 해안의 중간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³⁾

현재 중국이 정식의 정보를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 위원회가 오키나와해구 문제에 대해 심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설령 중국이 정식 정보를 제출하더라도 동중국해는 센카쿠열도의 영유권과 해양경계를 둘러싼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동 위원회가 심사할 가능성은 낮으며, 설령 심사를 하고 결

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preliminary/chn2009preliminaryinformation_english.pdf (2012.34.1 방문).

22) 아래 그림은 Jianjun Gao(2010), op.cit., p.151에서 재인용한 것으로, 개별 FOS 선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국의 상기 예비정보 문서를 참조.

23) Jianjun Gao(2010), op.cit., p.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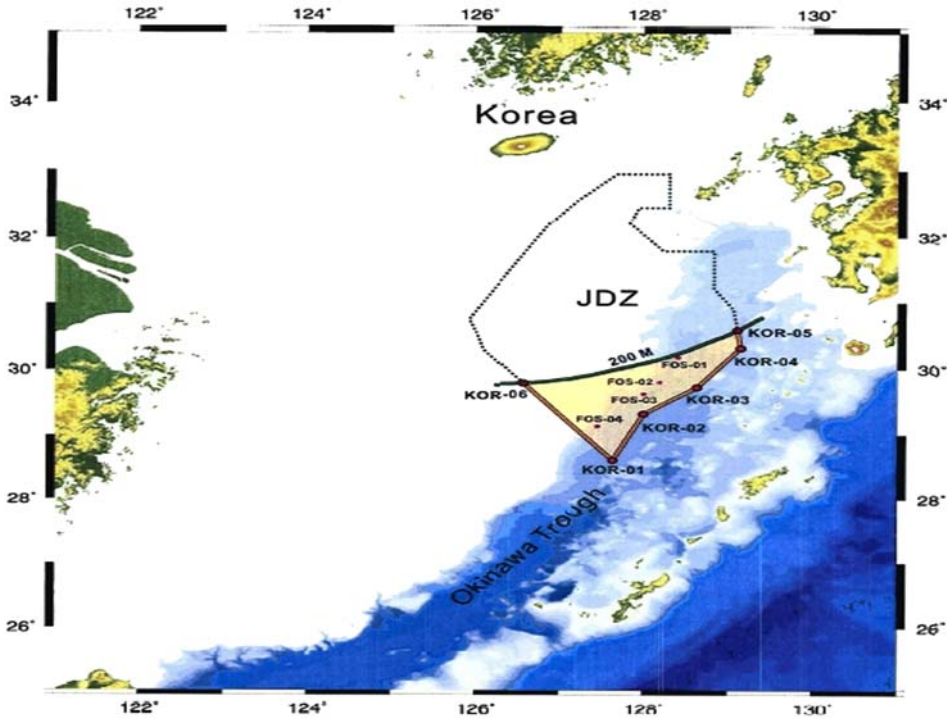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의 대륙붕 외측 한계 주장²⁴⁾

과를 가지고 권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양국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²⁵⁾ 특히 동 위원회 절차규칙 부속서는 영토 또는 해양분쟁이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국이 사전 동의하지 않는 한 심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⁶⁾

요컨대 중국의 주장대로 오키나와해구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지질학적 단절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현 국제법 체제하에서 일본과의 합의 없이는 그러한 경계선 설정이 어렵다. 더구나 오키나와해구를 경계로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것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양국 연안간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24) Korea, *Preliminary Information regarding the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p.7.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preliminary/kor_2009_preliminaryinformation.pdf (2012.4.1 방문).

25)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10항 및 동 협약 제2부속서(대륙붕한계위원회) 제9조 참조. 또한 대륙붕한계위원회 절차규칙(2008) 제1부속서 참조.

26) 대륙붕한계위원회 절차규칙 제1부속서 제5항 (a). "In cases where a land or maritime dispute exists, the Commission shall not consider and qualify a submission made by any of the States concerned in the dispute. However, the Commission may consider one or more submissions in the areas under dispute with prior consent given by all States that are parties to such a dispute."

않는다는 점이다.

(3) 400해리 이내에서의 대륙붕 경계 문제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1항은 대륙붕을 2가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대륙붕이란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않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를 의미한다. 요컨대 동 협약은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설과 200해리라는 거리 기준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해저의 지질학적 혹은 지형학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동중국해의 경우 최대 폭이 약 345해리이고, 오키나와해구가 중국에서는 200해리 이원이지만 일본에서는 100해리도 채 되지 않는 곳에 있다. 그래서 중국은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을, 일본은 거리를 근거로 대륙붕 경계가 획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경계획정의 기준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주지하다시피,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서는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론이 지지되었는데,²⁷⁾ 이것이 당시 한국과 일본 간의 대륙붕공동개발협정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경계획정에 관해 “형평한 해결”을 강조하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체제가 들어서면서 자연적 연장론은 후퇴하였다. 동 협약 채택과 같은 해에 국제사법재판소는 튀니지와 리비아 간 대륙붕사건에서 협약 제76조의 두 가지 기준 중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이 주된 기준이며, 200해리 거리 기준은 “특별한 상황에서” 연안국의 권원의 기초가 된다고 결정하였다.²⁸⁾ 하지만 동 판결로부터 불과 3년 후인 1985년 리비아와 몰타간 대륙붕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연안국에서 200해리 이내, 양국 간 거리가 400해리 이내에서는 경계획정시 지질학적 혹은 지형학적 개념은 중요하지 않으며 오로지 거리에 따른다고 결정하였다.²⁹⁾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러한 결정은 오다 재판관

27) North Sea Continental Shelf (Germany v. Denmark/Germany v. Netherlands), ICJ Reports 1969, para.101(C)(1).

28)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 ICJ Reports 1982, para.47.

29) Continental Shelf (Libya/Malta), ICJ Reports 1985, para.39. “The Court however considers that since the development of the law enables a State to claim that the continental shelf appertaining to it extends up to as far as 200 miles from its coast, whatever the 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corresponding sea-bed and subsoil, there is no reason to ascribe any role to geological or geophysical factors within that distance either in verifying the legal title of the States concerned or in proceeding to a delimitation as between their claims. This is especially clear where verification of the validity of title is concerned, since, at least in so far as those

이 반대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적어도 200해리 이원으로서의 대륙붕한계 확장을 제외하고는 “거리 기준이 지형학적 기준을 대체”한 것을 의미하였다.³⁰⁾

리비아와 몰타간 사건의 위 판결에 따르면 동중국해에서는 오로지 거리 기준만 적용될 것이다. 이 때 오키나와해구 경계를 주장하는 중국 측 주장은 배척되고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이 경계가 되거나 그러한 경계선이 “관련 사정”의 고려를 통해 약간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위 판결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가오 교수는 양국 간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는 경우를 3가지 상황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유형은 대륙붕 단절구간까지의 거리가 양국 모두 200해리가 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유형은 대륙붕 단절구간이 없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대륙붕 단절구간까지의 거리가 어느 한 쪽은 200해리가 되지 않지만 다른 한 쪽은 200해리가 넘는 경우이다. 가오 교수는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에 대해 오로지 거리 기준, 특히 중간선 원칙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 번째 유형의 경우 한 국가가 200해리 이원에 대해 거리 기준과 지질학적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오로지 지질학적 기준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¹⁾ 양국 간 최대 거리가 183해리에 불과한 리비아와 몰타 간 대륙붕 사건의 경우가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며, 세 번째 사례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사례이다. 후자의 사례, 즉 대륙붕 단절이 연안국으로부터 200해리가 넘는 경우, 200까지는 거리 기준을 그리고 그 이원은 지질학적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모순적이기 때문에 오로지 지질학적 기준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가오 교수는 동중국해의 경우 중국 연안에서 오키나와해구까지의 거리가 모두 200해리가 넘기 때문에 지질학적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례로 1997년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의 경계획정협정을 든다. 동 협정에서

areas are situated at a distance of under 200 miles from the coasts in question, title depends solely on the distance from the coasts of the claimant States of any areas of sea-bed claimed by way of continental shelf, and the geological or geo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ose areas are completely immaterial. It follows that, since the distance between the coasts of the Parties is less than 400 miles, so that no geophysical feature can lie more than 200 miles from each coast, the feature referred to as the “rift zone” cannot constitute a fundamental discontinuity terminating the southward extension of the Maltese shelf and the northward extension of the Libyan as if it were some natural boundary.”(밑줄 강조).

30) Continental Shelf (Libya/Malta), ICJ Reports 1985, para.61; Dissenting Opinion of Judge Oda. 이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 Jianjun Gao(2010), op.cit., pp.164-165.

31) Jianjun Gao(2010), op.cit., pp.171-172.

는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를 달리하였는데, 대륙붕에 대해서는 호주로부터 200해리 이원에 있지만 인도네시아 연안에 인접한 곳에서 대륙붕 단절이 있는 티모르갯을 경계로 하였다.³²⁾

위 세 번째 유형에서 가오 교수의 주장은 대륙붕 단절이 200해리가 넘는 국가 측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대륙붕 단절로부터 200해리가 되지 않는 국가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세 번째 유형에서 한 국가는 지질학적 기준을, 그리고 다른 국가는 거리 기준을 주장할 수 있는데, 양측 주장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리기준은 배제한 채 지질학적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1항에서 규정한 “형평한 결과”라고 하는 보다 근본적인 기준에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제기이다.

(4) 소결

중일 간 동중국해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들은 센카쿠열도제와 오키나와해구의 효과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있다. 그런데 비록 치열하게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가 독자적인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섬'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중국과 일본 모두 센카쿠열도를 근거로 경계획정을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경계획정에서 주된 요인은 오키나와해구를 대륙붕 단절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 또한 그렇게 보더라도 양국 간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이라는 지질학적 개념을 적용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 오키나와해구를 단순히 파인 것에 불과하다는 일본 주장과는 달리, 대륙붕의 단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우세해 보인다.³³⁾ 하지만 그렇더라도 양국 연안 간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리기준을 무시한 채 지질학적 기준만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강하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가 리비아와 몰타 간 대륙붕 사건에서 이 경우 거리기준만 적용된다고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륙붕과는 달리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에서는 지질학적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오키나와해구를 해양경계로 주장하는 것

32)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Australi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Establishing an Exclusive Economic Zone Boundary and Certain Seabed Boundaries (14 March 1997)

(www.un.org/Depts/los/LEGISLATIONANDTREATIES/PDFFILES/TREATIES/AUS-IDN1997EEZ.pdf) (2012.4.2 방문).

33) Victor Prescott and Clive Schofield(2005), *op.cit.*, p.439.

은 결국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이 서로 다른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것과 같다.³⁴⁾ 물론, 배타적경제수역은 200해리 내에서는 해저와 하층토, 즉 대륙붕도 포함하지만,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의 경계획정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들은 상부수역과 해저 및 하층토에 대해 서로 다른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도 이 점을 고려해서 해저와 하층토에 관해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해 규정한 권리가 제6부(대륙붕)에 따라 행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⁵⁾

그런데 일본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모두 중간선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입장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즉, 오키나와해구를 해양경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대륙붕에 한정되는 것인지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것인지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과 유엔해양법협약 제57조 모두 배타적경제수역이 200해리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중국 연안에서 200해리 이원에 위치하는 오키나와해구가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중국의 이러한 불명확한 입장은 한국과의 경계획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해와 남해의 경계획정에서 중국은 지질학적 근거로 중간선 이원까지 주장하지만 이를 배타적경제수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듯 중일 간에는 아직까지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고 있으며, 양국 간 입장이 첨예한 관계로 가까운 시일 내에는 합의도 어려워 보인다. 이런 가운데 동중국해에 매장된 풍부한 천연가스와 석유 자원의 개발문제가 대두되었다. 자원개발은 경계획정과도 밀접히 관련있지만, 경계가 획정되기만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일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거나 공동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국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절을 바꾸어 살펴보도록 한다.

2. 자원공동개발 문제

1) 자원공동개발에 관한 협의 과정과 원칙적 합의

1996년 각각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한 후 중국과 일본은 “해양법에 관한 협

34) Ibid., p.439.

35)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3항.

의”라는 이름으로 해양경계획정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2003년까지 14번의 협의를 진행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자, 2004년에는 “동중국해 문제에 관한 협의”로 이름을 바꾸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협의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중국은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과 같이 양국간 이해대립이 심각한 문제는 접어두고서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의 공동개발을 하자는 이른바, “분쟁을 접어둔 채, 공동개발”(shelving disputes and joint development)이라는 것을 제안하였다.³⁶⁾ 일본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2007년 4월 11일 자원의 공동개발에 관해 공동언론발표(China-Japan Joint Press Communiqué)를 하기에 이르렀다.³⁷⁾ 이 발표는 총 8개 항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양국의 발전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 제6항이 동중국해에서의 공동개발에 관한 조항이다.³⁸⁾

위 발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어 다음해 6월 18일 공동개발에 합의하게 되었다.³⁹⁾ “동중국해 문제에 관한 원칙적 합의”라는 제목의 2008년 합의는 크게 3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첫째 조항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협력에 관한 것으로, 동중국해를 “평화, 협력 및 우호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경제획정이 되기 전까지 협력을 하자는 내용이다. 둘째 조항은 공동개발구역에 관한 양해사항이고, 셋째 조항은 춘샤오 가스전 개발에 일본 기업의 참여에 관한 양해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에서는 공동개발구역과 춘샤오 석유 가스전 개발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36) 이상은 다음을 참조: Gao Jianjun, “Joint Development in the East China Sea: Not an Easier Challenge than Delimitation”, 23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2008), pp.39-40.

37) China-Japan Joint Press Communiqué(2007.4.11). <http://www.fmprc.gov.cn/eng/wjdt/2649/t311005.htm>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2012.4.2. 방문).

38) “VI. The two sides reached the following common understanding on properly addressing the East China Sea issue: 1. Both sides are committed to making the East China Sea a sea of peace, cooperation and friendship. 2. They agreed to carry out joint development based on the principle of mutual benefit as a temporary arrangement pending the final demarcation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positions of either side on matters concerning the law of the sea. 3. They will conduct consultation at higher level when necessary. 4. They will carry out joint development in larger waters acceptable to them. 5. They will speed up consultations and hope to submit a detailed plan on joint development to the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in autumn this year.” (밑줄 강조).

39) 양국 합의의 정식 명칭은 “Principled Consensus on the East China Sea Issue”이다. 원문은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fmprc.gov.cn/eng/xwfw/s2510/t466632.htm> (2012.4.2 방문).

2) 공동개발구역 설정

2008년 6월 18일 합의한 공동개발구역은 동중국해의 북부지역에서 7개의 좌표를 직선으로 연결한 조그만 다각형 구역이다.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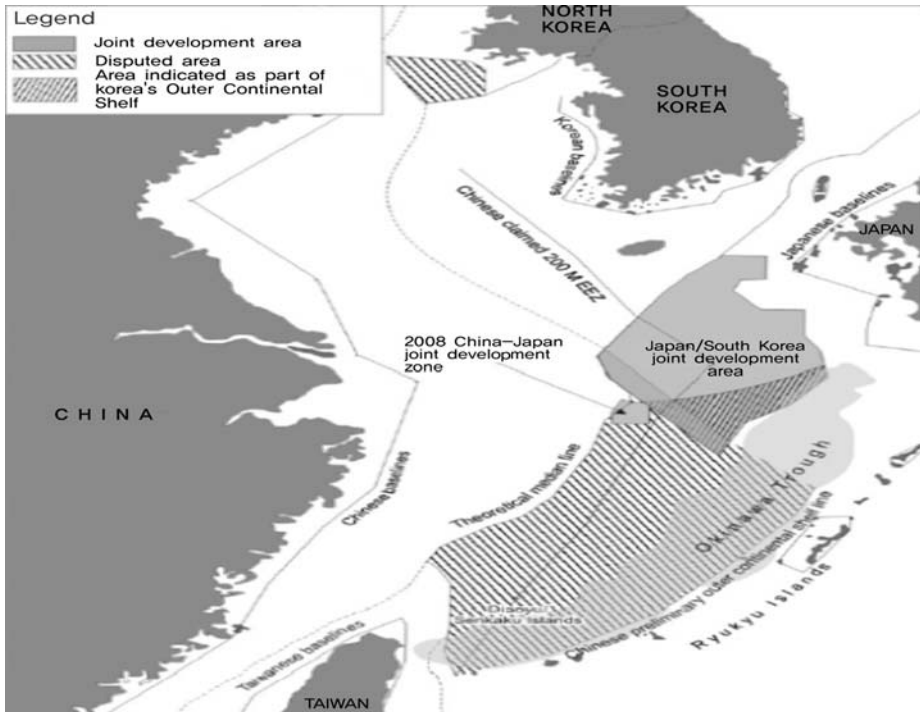


그림 4. 중일 공동개발구역과 관할권 중첩⁴¹⁾

위 공동개발구역은 일본이 주장하는 해양경계선인 중간선에 걸쳐있다.⁴²⁾ 이것은 대륙붕 경계와 관련하여 중국은 오키나와해구를, 그리고 일본은 중간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나온 타협안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공동개발구역이

40) 7개의 좌표는 다음과 같다. 1. 북위 29° 31', 동경 125° 53' 30"; 2. 북위 29° 49', 동경 125° 53' 30"; 3. 북위 30° 04', 동경 126° 03' 45"; 4. 북위 30° 00', 동경 126° 10' 23"; 5. 북위 30° 00', 동경 126° 20'; 6. 북위 29° 55', 동경 126° 26'; 7. 북위 29° 31', 동경 126° 26'.

41) Clive H. Schofield and Ian Townsend-Gault, "Choppy waters ahead in "a sea of peace cooperation and friendship"?: Slow progress towards the application of maritime joint development to the East China Sea", 35 *Marine Policy* (2011), p.27.

42) Gao Jianjun(2008), op.cit., p.292.

양국 주장 중첩수역에 한정하지 않고, 일본이 주장하는 경계선인 중간선의 중국 측 수역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간선의 중국 측 수역은 양국 간 다툼지역이 아님에도 공동개발구역에 포함이 되었다는 점이다.⁴³⁾ 또한 동 구역은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공동개발구역과 중첩되지 않으면서 접해 있다. 실제로 동 구역에 상당량의 자원 매장이 추정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런데 2008년 공동개발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⁴⁴⁾

3) 춘샤오 가스전 개발 문제

2008년의 “원칙적 합의” 세 번째 조항은 춘샤오 석유 가스전 개발에 대해 일본 기업의 참여를 중국 기업이 환영한다고 규정한다. 춘샤오 유전은 공동개발 구역과는 달리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 가까이 중국 측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중국은 일본 기업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발을 감행함으로써 일본의 반발을 불렀다. 특히 2009년 1월 중국이 일방적으로 유전 개발을 하자, 일본이 강하게 항의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동 유전은 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것으로 분쟁수역이 아니고, 중국의 완전한 주권에 속한다고 대응하였다.⁴⁵⁾

그런데 2008년의 원칙적 합의는 일본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음의 조건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즉, 일본 기업의 참여는 “연안 석유자원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서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다루는 관련 중국 법률들에 따라서” 허용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중국 기업의 유전 개발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 사항은 기술과 자본의 투자액, 채광권의 비율 같은 것이지만 이는 모두 양국 기업체 간에 논의할 사항이고 정부 간에는 투자협정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정도로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이다.⁴⁶⁾ 석유자원 개발과 관련한 중국의 주요 법령은 외국 기업과 협력을 통한 연안석유자원개발에 관한 규정

43) 중국은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한 것이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을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2008.6.18.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양 유(Jiang Yu) 발언.(Gao Jianjun(2008), op.cit., p.300, 각주 27에서 재인용).

44) Xinjun Zhang, “Why the 2008 Sino-Japanese Consensus on the East China Sea Has Stalled: Good Faith and Reciprocity Considerations in Interim Measures Pending a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2011), p.53.

45) Gao Jianjun(2008), op.cit., p.294; Xinjun Zhang(2011), op.cit., p.54.

46) Gao Jianjun(2008), op.cit., p.295.

인데, 이 규정에 의하면 중국 국영석유회사(CNOOC)가 외국기업과의 연안 석유 자원개발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⁴⁷⁾ 그러므로 2008년 합의 제3항의 춘샤오 가스전 개발에 대한 일본 기업 참여 문제는 동 합의 제2항의 공동개발구역 설정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4) 기타 지역의 공동개발 문제

2008년의 원칙적 합의 제2항 공동개발구역 부분의 (d)항에는 “동중국해의 다른 부분(other parts)에서의 공동개발 조기실현을 위해서 협의를 계속하기로 양국이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동중국해의 다른 부분”이 어디를 나타내는지 의문이 생긴다. 중국은 이것이 어느 지역을 특정한 것이 아니며 장차 양국이 협의해서 정해야 할 지역이라고 보는 반면, 일본은 현재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중간선 부근 다른 지역에서의 유전 지역이라고 본다.⁴⁸⁾

5) 2008년 합의의 법적 성질

위와 같이 2008년의 “원칙적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2008년 합의가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인지 아니면 단순한 합의문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왜냐하면 그에 따른 국가책임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2008년 합의는 형식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점에서 조약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첫째, 제목에서도 조약, 협정 등이 아닌 “원칙적 합의”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둘째, 합의사항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선언하였을 뿐, 양국 대표가 서명하지 않았다. 셋째, 일본은 동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양국이 “필요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일본이 동 합의가 조약 체결을 위한 전단계로 보았음을 의미한다.⁴⁹⁾

이렇듯 2008년 합의를 조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약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예컨대 가오 교수는 특히 동 합의 제2

47) Ibid.

48) 중국은 2008년 합의 이전에 다음과 같은 4개의 유전을 개발해 왔는데, 모두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의 중국 측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Longjing, Duanqiao, Tianwaitian, Chunxiao. (Gao Jianjun(2008), op.cit., p.296 참조).

49) Gao Jianjun(2008), op.cit., p.297.

항이 공동개발구역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후 양국의 이행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과 제3항이 춘샤오 유전 개발에 일본 기업의 참여를 보장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동 합의가 양국에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보았다.⁵⁰⁾

생각컨대, 가오 교수의 주장대로 2008년 합의가 구체적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양국 대표의 서명조차 없는 등 형식적인 요건들과 합의 전후 양국의 태도들을 고려했을 때, 양국 모두 이를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의 동 합의의 불이행에 대해 일본이 국가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6) 중국의 독자적 자원개발과 “Rule of Capture” 이론

일본은 자신이 주장하는 해양경계선, 즉 중간선에 인접한 중국 측에서 중국이 유전개발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면서 공동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비록 중국의 유전개발이 중간선 넘어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해저 지형상으로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중간선의 일본 측에 있는 유전도 중국 측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여기서 아직 경계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계선 인근에서 일방적으로 자원개발을 하는 것이 국제법에 합치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경계획정 합의에 이르기 전에,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이 기간 동안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⁵¹⁾ 즉, 동 협약은 실질적인 잠정약정 체결과 최종합의 방해금지라는 두 가지 의무를 경계획정 미체결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은 2008년 합의를 통해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였지만, 중국은 중간선의 자국 측에 있는 4개의 유전에 대해서는 일본과 어떠한 약정도 체결하지 않았다. 하지만,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국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동 조항은 약정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며”라고 하고 있지만, 이 표현을 법적 구속력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⁵²⁾

50) Ibid.

51)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

보다 중요한 문제는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두 번째 의무이다. 중국이 일본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유전을 개발하는 것이 양국 간 장래의 해양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여부이다. 그런데 사실 해저의 유전지대에는 중간선과 같은 인위적인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간선을 기준으로 유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일국의 일방적인 자원개발은 타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며, 이는 곧 경계획정에 관한 최종합의를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Rule of Capture”라는 법이론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민법상 무주물 선점을 의미하는데, 예컨대 주인이 없는 물건을 습득하거나 야생 동물을 포획한 사람이 그 주인이 된다. 미국에서는 이 이론을 지하자원개발에 적용하는데,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서 나오는 석유를 획득하며, 지하에서는 석유가 흐른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⁵³⁾ 그러나 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Rule of Capture” 이론이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국제법은 자국의 권리행사를 위해 타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은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간선의 일본 측 유전과 연결되어 있는 한, 중간선의 중국 측에서 행하는 중국의 유전자원 개발은 국제법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⁵⁴⁾

Ⅲ. 결 론

중국과 일본은 조어도 영유권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지만, 양국 모두 조어를 근거로 한 해양경계는 주장하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은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론을 근거로 오키나와해구를 경계로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양국 연안의 중간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양국 간 거리가 400해리가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

52) Deniz Tas, “Oil and gas in the East China Sea: maritime boundaries, joint development and the rule of capture”, *International Energy Law Review* (2011), p.58.

53) Ibid., p.60; Robert E. Hardwicke, ““The Rule of Capture and its Implications as Applied to Oil and Gas”” 13 *Texas Law Review* (1934-1935), p.393

54) Deniz Tas(2011), p.61.

쪽은 지질학적 혹은 지형학적 기준을, 다른 한 쪽은 단순한 거리 기준을 내세운 결과이다. 한편, 1985년 리비아와 몰타 간 대륙붕 사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 간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는 경우, 오로지 거리 기준만 적용된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가 후속 판례들에서 뚜렷이 정착되느냐가 중일 간 경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오키나와해구가 중국 연안에서 200해리 이내에 있기 때문에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이 서로 다른 경계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로 주장하는 것이 어딘지 명확하지가 않다. 만약 형평의 원칙을 이유로 대륙붕과 동일한 경계를 주장한다면, 이는 배타적경제수역의 한계를 200해리로 정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뿐만 아니라 이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의 법률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해양경계는 우리나라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한일어업협정상의 제주도 남쪽 중간수역의 일부와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의 상당부분은 중일어업협정상의 잠정조치수역과 중첩되며, 중국이 주장하는 200해리 경계선과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과도 중첩하고 있다. 따라서 동중국해의 북부 일부 수역은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주장이 중첩되기 때문에, 3국이 합의하여 삼각지점을 정해야 한다. 그러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3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개발구역의 설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은 2008년 자원의 공동개발에 대해 합의했지만, 합의한 구역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에 인접한 아주 작은 구역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 중국은 춘샤오 유전을 포함한 4개의 유전을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 인근의 중국 수역에서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중국의 일방적 유전개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중간선의 중국 측 유전이 중간선 넘어서까지 연결되어 있다면, 중국의 일방적 유전개발은 일본의 잠재적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국제법에 반한다.

Abstract

Maritime Delimitation and Joint Resource Development in the East China Sea

LEE Seok-woo* · PARK Young-kil**

As is generally known, the sovereignty dispute over the Senkaku Islands between China/Taiwan and Japan was triggered by a report commissioned by the UN in 1968, which reported the possibility of a substantial amount of petroleum and natural gas buried in the South China Sea. When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over the Ryukyu Islands was transferred from the US to Japan in 1972, jurisdiction over the Senkaku Islands was also transferred. A dispute ensued between China (Taiwan) and Japan over the Senkaku Islands except during the period in which formal relations were established between the two states. This paper will take a look particularly at the events that occurred in the 2000's and discuss their recent trends and aspects of the dispute.

Though China and Japan agreed to joint resource development in 2008, the agreed zone was a very small area adjacent to the Korea-Japan Joint Continental Shelf Development Zone, and the points of agreement have not been implemented. China has been developing four oil fields including Chunxiao in its waters adjacent to the median line asserted by Japan. However, China also has been excluding the participation of Japan, while Japan has been strongly objecting to the unilateral development of oil fields by China. If indeed the oil fields on China's side are connected past the median line asserted by Japan, then China's unilateral development will infringe upon the potential sovereign rights of Japan, thereby violating international law.

* Professor, Inha University Law School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Maritime Institute